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14] [학교규정 제1967호, 2014.7.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교원 등(이하 "비전임 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4., 2013.2.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겸임교원"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하여 교육 및 공동연구 등을 비전일제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12]

2. "초빙교원"이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외국인으로서 일반 또는 특수한 교과를 외국어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12]

3. "강의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시간강사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12.,2013.11.13.]

4. "연구교원"이란 연구소(원), 부속시설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 재원 등으로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12.,2013.11.13.]

5. "시간강사"란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단위로 교과목의 강의 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12.]

6. "산학협력중점교원"이란 강의 및 기술이전 등의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11.13.]

제3조(적용범위) 비전임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격) 비전임 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국내외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 실적이 탁월하거나 권위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초빙교원

가.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나.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강의교원[개정 2013.11.13.]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외국인 등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연구교원[개정 2013.11.13.]

특수한 분야의 연구를 위한 외국인 등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시간강사

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담당 교과목의 특성상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3.2.12.]

6. 산학협력중점교원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신설 2013.11.13.]

제5조(구비서류) 비전임 교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로 한다.

1. 임용추천서
2. 활용계획서
3. 소속기관장 및 본인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4. 학력·경력증명서(추천 기관장 확인서로 대체 가능)
5. 해당 기관 인사(운영)위원회 회의록
6. 인사기록 카드 또는 이력서(연구실적 등 포함)
7.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 사본(외국인에 한함)[개정 2013.2.12.]
8. 그 밖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3.2.12.]

제6조(복무 및 당연 퇴직 등) ① 비전임 교원의 임용 계약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②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면직·징계)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면직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용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본교 교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3.2.12.]
3. 교육 및 연구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개정 2013.2.12.]

제8조(신분증 및 편의제공) ① 비전임 교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비전임 교원에게는 교육·연구 및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2.12.]

제2장 겸임교원

제10조(겸임교원의 구분) 겸임교원은 겸임교수, 겸임부교수, 겸임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2.12.]

제11조(임용) ① 겸임교원은 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2.12.]

②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2.12.]

제12조(근무 등) ① 겸임교원의 근무는 소속기관과 겸임기관간의 협의 및 별도로 정하는 임용계약에 의한다.[개정 2013.2.12.]

② 겸임교원은 겸임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3.2.12.]

제13조(처우) ① 겸임교원의 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2.]

1. 강의 또는 연구를 담당하는 경우
 2. 대학원생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
- ② 겸임교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에 준하여 강사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2.]

제3장 초빙교원

제14조(초빙교원의 구분) 초빙교원은 초빙석좌교수, 초빙교수, 초빙부교수, 초빙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2.12.]

제15조(임용) ① 초빙교원은 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되, 계약서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2.12.]

② 임용기간은 학기 또는 학년단위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재임용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이하 "통산"이라 한다) 3년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임무 및 복무)(임무 및 복무) ① 초빙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2.12.]

1.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 포함)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대학(원)생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5. 본교가 지정하는 연구

② 초빙교원은 원칙적으로 타교에 출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교에 출강할 수 있다.[개정 2013.2.12.]

제17조(처우) ① 초빙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빙교원의 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강의 또는 연구를 담당하는 경우
2. 대학원생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

② 소속 대학(원)장 또는 부속시설의 장은 초빙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강사에 준하여 강사료, 특별강사료 및 실습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2.12.]

제4장 강의교원 [개정 2013.11.13.]

제18조(소속과 구분) ① 강의교원은 대학(원) 및 학과(부) 또는 기초교육원 소속으로 한다.

② 강의교원은 강의교수, 강의부교수, 강의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제19조(임용) ① 강의교원은 대학(원)장 또는 기초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되, 계약서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12.,2013.11.13.]

② 강의교원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③ 강의교원의 재임용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11.13.]

제20조(처우 및 재원) ① 강의교원에게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총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3.2.12.,2013.11.13.]

② 강의교원의 보수는 추천자가 기초교육원장인 경우 법인회계(강사료)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추천자가 대학(원)장인 경우 대학(원)별 법인회계 배정예산을 포함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개정 2013.2.12.,2013.11.13.]

제21조(임무 및 복무) ① 강의교원은 매학기 3학점을 기준으로 4강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강의를 담당하고, 강좌 개발 및 학사관련 업무에 종사한다.[개정 2013.11.13.]

② 전항의 강좌개발 및 학사관련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전임교원의 직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1.13.]

③ 강의교원은 원칙적으로 타교에 출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교에 출강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④ 강의교원의 근무시간,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1.13.]

제5장 연구교원 [개정 2013.11.13.]

제22조(소속과 구분) ① 연구교원은 연구기관 소속으로 한다.[개정 2013.11.13.]

② 연구교원은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11.13.]

제23조(임용) ① 연구교원은 연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되, 계약서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12.,2013.11.13.]

② 연구교원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③ 연구교원의 재임용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1.13.]

제24조(처우 및 재원) ① 연구교원에게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수(퇴직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

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개인 부담분 포함. 기관 부담금은 연구기관에서 별도 부담)를 연구기관 자체 재원에서 지급한다. 다만, 연구소(원) 이외의 기관인 경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재원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4.,2013.11.13.]

제25조(임무)① 연구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3.2.12.,2013.11.13.]

1. 본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 수행
 2.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등
 3.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업무[신설 2013.11.13.]
- ② 연구교원은 원칙적으로 타교에 출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교에 출강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 ③ 연구교원의 근무시간,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및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1.13.]

제26조(BK교수 등)①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에 의거 소속 사업단 내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의 선발에 의하여 임용된 BK교수는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7.14.]

② 인문한국사업에 의거 소속 연구소(원) 내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기 위하여 각 연구소(원)의 선발에 의하여 임용된 HK교수는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시간강사

제27조(경력환산)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에 한하며, 연구경력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연구실적의 환산율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3.2.12.]

제28조(위촉)① 시간강사는 대학(원)장 또는 언어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학기단위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간강사의 계약서는 "별표2"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2.12.]

제7장 산학협력중점교원[신설 2013.11.13.]

제29조(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원) 및 학과(부), 연구기관 및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한다.[신설 2013.11.13.]

제30조(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되, 계약서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임용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13.]

제31조(처우 및 재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재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3.11.13.]

제32조(임무 및 복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소속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여한 교육 및 연구 활동
2.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른 인력 양성
3.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원칙적으로 타교에 출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교에 출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3.]

부칙 <제01968호, 2014.7.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